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8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윤재옥 · 김기웅 · 김선교
백종헌 · 서천호 · 최은석
김 건 · 김상훈 · 이인선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제31조제2항(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2”로,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의2”로,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 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 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 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 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u> 에 관한 사항	2. <u>제31조제2항(제46조의2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 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u>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⑤ (생 략)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⑥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⑥ (생략)

<신설>

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의 절차 및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1.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보완·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6조의2(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